

20
25

개정 세법

이철재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박지섭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4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5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 2025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5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5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2024.7.25.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16.



차례

제1부 법인세법	1
제2부 소득세법	23
제1장 종합/퇴직소득세법	25
제2장 양도소득세법	65
제3부 부가가치세법	77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제5부 국세기본법	91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	99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1
제2장 국세징수법	111

제 1 부

법인세법

1 중소기업·중견기업 범위 조정

(1)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제외업종 등 추가 ○ (좌 등)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6의4·§9④)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제외업종 등 추가 ○ (좌 등)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임직원 할인금액에 수익 및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1, 법인령 §19)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수익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손비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 할인금액을 손비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범위</p> <p>○ (대상)</p> <p>- 「상법」 제340조의2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p> <p>* 자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손금액)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p>	<p><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대상 확대</p> <p>- (좌 동)</p> <p>-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p> <p>* 상장회사가 자사 또는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p> <p>○ (좌 동)</p>

〈개정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4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법인령 §18)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 -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제외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p>

〈개정이유〉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법인령 §48①·②)

종전	개정(안)
<p>□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p> <p>○ ①~④ 중 선택, 미선택시 ③ 선택으로 간주</p> <p>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③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④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공동경비 분담 적용 손비 범위</p> <p>○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p> <p>○ (좌 등)</p> <p>○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①~② 중 선택, 미선택시 ① 선택으로 간주</p> <p>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p> <p>□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p> <p>○ (좌 등)</p> <p>○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p> <p>*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p>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보완(법법 §21(5))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조정 4. (좌 동) 5. ----- 위반을 이유로 -----

〈시행일〉 2025.1.1.부터 시행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이지만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2024.12.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제재”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7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개정 확정)] ○ (좌 동)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령 §24①·§26)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철도시설관리권 * 내용연수(30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개정이유>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9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가속상각 허용)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10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p><input type="checkbox"/>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p>*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 + 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p>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11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86의3①(2))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유가증권 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 <p>*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p>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❶ ~ ❸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❶ ~ ❸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3의2①·②, §76의 18①·②)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input type="checkbox"/>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원칙) ❶, ❷ 중 선택		○ (좌 동)	
❶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 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은 ❷방식 적용	
❷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단서 신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2.12.31. 개정되어 ’25.1.1.부터 시행되는 규정)

(1)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법법 §57의2)

종전	개정
<p>〈신 설〉</p> <p>※ 종전의 간접 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법인법 §57의2) 규정 폐지</p>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p> <p>(1)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p> <p>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u>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u> 이 합산되어 있을 것</p> <p>②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 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납부하였을 것</p>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p> <p>(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ext{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text{공제율}^*$ </div> <p>* 공제율</p> <p>1) 투자신탁이익의 경우</p> <p>③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p>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p>④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p> $1 - \text{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p>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 외의 소득의 경우</p> $1 - \text{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p>(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p> <p>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text{종합소득금액}}$ </div> <p>*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함. **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함.</p> <p>(4)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p> <p>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p>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73 ②, ③)

종전	개정
〈신 설〉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p> <p>(1)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을 한도로 ②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차감율*</p> </div> <p>*차감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1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p> <p>(2)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위 ②의 금액이 위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p>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종전	개정
<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 (적용기한) '24.12.31. 	<p>□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사항

(1) 적용기한 연장 및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종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 (공제율)					□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 구조 도입 ○ (적용기한) '27.12.31. ○ (좌 등) ○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분(%)	기본			추가 ¹⁾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2	8~15 ²⁾	25	-	일반	2	8~20 ²⁾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³⁾	30	최대 10
국가전략 기술	30		40	최대 10	국가전략 기술	30	30, 35 ⁴⁾	40	최대 10
1) 추가분 :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1) (좌 등)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2)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²⁰·§21¹²)

종전	개정(안)
<p>〈신 설〉</p>	<p>□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p> <p>①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 3년간 유예</p> <p>②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 5년간 유예(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p> <p>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 3년간 유예</p> <p>*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p>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⁸·§126²)

종전	개정(안)
<p>□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p> <p>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 : 3년간 유예</p> <p>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 3년간 유예</p> <p>*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p>	<p>□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p> <p>①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 : 5년간 유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p> <p>② (좌 등)</p>

〈개정이유〉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분부터 적용

18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사항

(1) 적용기한 연장,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추가공제율 상향 ○ (좌 등)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기본</th> <th rowspan="2">추가¹⁾</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td> <td>10</td> <td rowspan="2">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 colspan="2">15</td> <td>25</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 전략기술	15		25	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기본</th> <th rowspan="2">추가¹⁾</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 7.5²⁾</td> <td>10</td> <td rowspan="3">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 9³⁾</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15</td> <td>15, 20⁴⁾</td> <td>25</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²⁾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 ³⁾	12	국가 전략기술	15	15, 20 ⁴⁾	25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 전략기술	15		25	4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²⁾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 ³⁾	12																																																	
국가 전략기술	15	15, 20 ⁴⁾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좌 등)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상향)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146)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4.12.31. ○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①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건축물, 차량 등 제외) ② ①의 제외자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규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7.12.31.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p>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9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0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법인령 §80의 2④·§82의2⑦, 조특령 §35의2⑦)

〈 법 개정내용(법인법 §46②) 〉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구체적 주식 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안)
<p>□ 적격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p> <p>*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p> <p>① (교부) 합병·분할·주식교환등 대가 중 80% 이상(단순분할은 전액)을 주식등으로 교부</p> <p>② (배정)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등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③ (보유) 배정받은 주식을 합병·분할·주식교환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p>	<p>□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p> <p>○ (좌 등)</p> <p>-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분비율 산정</p> <p>○ (좌 등)</p>

〈개정이유〉 자기주식 관련 적격 구조조정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1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76의22)

종전	개정
<p>□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p> <p>○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p>	<p>□ 적용기간 확대</p> <p>○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p>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76의2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23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120의22②)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❶ + ❷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투상세 가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❶ + ❷ + ❸ ❶ (좌 등) ❷ (좌 등) 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24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령 §120의22⑤)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input type="checkbox"/> 정산 예외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신고기한 전

〈개정이유〉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92의2④)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내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지원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 10%)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26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74①)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p> <p>*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p>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등)</p> <p style="text-align: right;">-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p>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7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령 §3②)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유·무형자산 처분수입의 범위</p> <p>○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 전입 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 <p>*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시가</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에 장기간 사용한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p> <p>○ (좌 등)</p> <p>○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p>* 비과세 처분수입 = ① × ②</p> <p>①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② 직접 사용기간 ÷ 보유 기간</p>

〈개정이유〉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8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②)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2부

소득세법

1 총칙

(1) 거주기간 인정 기준 명확화(소령 §4②, 소칙 §2①·②)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u>관광, 질병 치료 등</u> 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 (좌 등) ○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u>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u> *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 친지방문, 출장·연수 등 직업·사업 관련 사유 추가하여 구체화할 예정(시행규칙)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금융소득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종전	개정
<p>□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p> <p>*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p> <p>○ (시행일) '25.1.1.</p>	<p>□ 폐지*</p> <p>*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 유지</p> <p>※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p>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2)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소령 §25)

종전	개정(안)
<p>□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p> <p>①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p> <p>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p> <p>③ 우체국보험계약</p> <p>〈추 가〉</p>	<p>□ 과세대상 저축성보험 계약 범위 합리화</p> <p>○ (좌 등)</p> <p>④ 위 ①~③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p>
<p>□ 비과세 저축성 보험</p> <p>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p> <p>㉠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합계액 1억원 (2017.3.31.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p> <p>㉡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험(매월 납입하는 보험료합계액이 150만원 이하)</p> <p>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p>	<p>□ 비과세 범위 합리화</p> <p>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p> <p>○ (좌 등)</p>

	<p>※ 위 ④의 계약과 역외보험계약*은 비과세저축성보험에서 제외</p> <p>*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p>
--	--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및 위법 보험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소령§26·§26의3)

종전	개정(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p> <p>*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RP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 ○ 주식RP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개정이유〉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른 소득구분 명확화

(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규정 신설

1)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법 §17①)

종전	개정
<p>□ 배당소득의 범위</p> <p>○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p> <p>○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p> <p>○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p> <p>①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 배당소득</p> <p>②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 보험차익</p> <p>③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 배당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p> <p>○ (좌 동)</p> <p>○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p> <p style="padding-left: 20px;">*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p> <p>○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p> <p style="padding-left: 20px;">*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p> <p>□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p> <p>○ (좌 동)</p> <p>○ (좌 동)</p> <p>③ 적격집합투자기구</p> <p style="padding-left: 20px;">*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따른 문구 수정</p> <p>④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 배당소득</p>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각투자상품은 아파트, 상가, 예술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여러 개로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임.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였음. 이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함.

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가.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 규정(소령 §26의3)

종전	개정(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①+②)</p> <p>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신탁업자는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p> <p>②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p> <p><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①+②)</p> <p>①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p> <p>②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p> <p><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 포함 ○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p>※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시행규칙 위임</p>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나.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소령 §46)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수입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지급받은 날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지급받은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 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u>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u> : 지급받은 날</p>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5)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령 §26의2④)

종전	개정
<p>□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① 채권등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③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④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024.9.10.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의제배당

1) 합병대가 계산방법 명확화(소법 §17②)

종전	개정
<p>□ 합병시 의제배당(①-②)</p> <p>①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p> <p style="padding-left: 20px;">-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p> <p>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p>	<p>□ 합병대가 명확화</p> <p>○ (좌 등)</p> <p style="padding-left: 20px;">-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u>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u></p> <p>○ (좌 등)</p>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합병대가에 주식, 출자, 금전 외에 사채, 유가증권,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가액”을 추가하여 합병대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령 §27, 조특령 §14의2·§14의3)

종전	개정(안)
<p>□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①-②)</p> <p>①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재산의 가액</p> <p>② 그 주식의 취득가액</p> <p style="padding-left: 40px;">〈추 가〉</p>	<p>□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p> <p>○ (좌 등)</p> <p style="padding-left: 20px;">- <u>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 행사 당시 시가</u></p> <p>※ 행사 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p>

(7)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소령 §26의3⑥)

종전	개정(안)
<p>□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적용분)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토지의 재평가차액으로서 재평가세 1% 적용분은 과세) 	<p>□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1% 적용분)의 감액배당은 과세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법 §17③)

종전	개정
<p>□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특례

1)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3①, 조특령 §92의9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국채법」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 (만기) 10년 이상 ○ (과세특례) 매입(2억원)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14%) ○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좌 등) - 10년 → 5년 이상(조특령 개정안) ○ (좌 등) ○ '27.12.31.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3 사업소득

(1) 종업원 할인금액을 수익과 손비에 포함(소령 §51, 소령 §55)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수익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입금액 :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금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판매장려금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않음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 <p><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li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left: 40px;">〈신 설〉 ○ 사업용 자산 임차료, 사업용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p><input type="checkbox"/> 종업원 할인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입금액 :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판매장려금, 대손금과 종업원 할인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않음 <li style="padding-left: 20px;">* 종업원 할인금액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계열회사 포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제공한 경우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p style="text-align: center;">} ○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종업원 할인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padding-left: 20px;">○ (좌 동) <li style="padding-left: 40px;">- 종업원 할인금액. 이 경우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p style="text-align: center;">} ○ (좌 동)</p>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보완(소법 §33①(1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u>제재(制裁)로서</u> 부과되는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조정 4. (좌 등) 5. ----- <u>위반을 이유로</u> -----

〈시행일〉 2025.1.1.부터 시행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이지만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2024.12.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제재”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3)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령 §62·§63)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등)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개정이유〉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과세 특례 신설

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과세 특례(조특법 §104의34 신설)

종전	개정
<p>〈신 설〉</p>	<p>□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경우 ○ (과세특례)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적용제한) 이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사후관리)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최저한세) 적용배제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31 신설)

종전	개정(안)
<p>〈신 설〉</p>	<p>□ 적용대상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한 건설기계 <p>□ 분할 산입 금액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 (= ①×② - 1,000만원) (※ ①×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① 양도한 건설기계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② $\frac{\text{신규 건설기계 취득가액}}{\text{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100% 한도) <p>□ 사후관리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의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① 사업 미개시 또는 ② 폐지·해산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 <p>*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2%) 추가 납부</p>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1)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1)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법 §12(3)머목)

종전	개정
<p>□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p> <p>○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p>	<p>□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p> <p>○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p> <p>① 출산지원금 :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p> <p>※ 20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1.1.부터 2024.12.31.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도 비과세함</p> <p>② 보육지원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규정과 자녀세액공제규정에서 같음)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p>

〈개정이유〉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

〈적용시기〉 '25.1.1. 이후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령 §17의2 신설)

종전	개정(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p>* 법령 §43㉔에 따른 지배주주등</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기업출산지원금 지급횟수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 ○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 적용 (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소령 §16①(2))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p> <p>*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p><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개정이유>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소법 §12(3), §20①(6))

종전	개정
〈신 설〉	<p>□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 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p>□ 할인금액 중 비과세 근로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❷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❸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비과세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소령 §17의5 신설)

종전	개정(안)
〈신 설〉	<p>□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¹ 등*²)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소법」 §1②(2)의 귀금속제품·고급시계·고급용단·고급가방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 ❷ (그 외 재화) 1년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소령 §38③)

종전	개정(안)
<p>〈신 설〉</p>	<p>□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및 시가의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②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④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사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하여 주는 경우 ○ 시가의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법인령 §89(시가의 범위)에 따름 - (예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p>*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탑승권 등</p>

〈개정이유〉 근로소득인 종업원 할인금액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p> <p>①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p>②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16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p>③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조특법 §16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 소득 (양도가액-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4.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27.12.31.</p>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5 연금소득

(1)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령 §40의2②)

종전	개정(안)												
<p>□ 연금계좌 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❷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p>	<p>□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td> <td>▶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i)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ii) 기초연금수급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상부동산</td> <td>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납입한도</td> <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납입기간</td> <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후관리</td> <td>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td> </tr> </tbody> </table> <p>※ ❷·❸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p>	구분	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i)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ii)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구분	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i)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ii)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소득

(1)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법 §37⑤, 2020.12.29. 소법 개정부칙§1(2), 2020.12.22. 법법 개정부칙 §1)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 과세 ○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5.1.1.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2)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령 §19③(2))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개정이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소득공제

(1)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법 §50①(3))

종전	개정
<p>□ 기본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사람 수×1명당 연 150만원 ○ 기본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20세 이하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아동 ○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한정 	<p>□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본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 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아동 ○ (좌 동)

〈개정이유〉 2003년 4월 20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은 2023년 4월 20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기간에는 이미 만 20세가 된 날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9일까지는 만 20세로 생각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20세 이하의 의미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법제처 22-0472, 2022.9.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령 §107①·②)

종전	개정(안)
<p>□ 장애인의 범위</p> <p>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p> <p>②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p> <p>③ <u>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u></p> <p>□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p> <p>○ 장애인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장애인 범위 명확화</p> <p>○ (좌 등)</p> <p>③ <u>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u></p> <p>□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p> <p>○ (좌 등)</p> <p>○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p> <p style="font-size: small;">*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증빙서류)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126의2②)

종전	개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p>□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추가공제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항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 시행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종전	개정(안)
〈신 설〉	<p>□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만큼을 시설이용료로 인정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종전	개정																
<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공제적용 소득)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근로)소득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p>□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등) ② 총급여액 <u>7천만원</u> → <u>8천만원</u> 이하 법인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근로)소득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법 §59의2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인 경우) 15만원 - (2인인 경우)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 + (2명 초과인원수 × 3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인 경우) 25만원 - (2인인 경우) 5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 + (2명 초과인원수 × 40만원)

〈개정이유〉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추가 출산 유인 제공하기 위하여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0만원씩 인상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법 §56의3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방식)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대상) ❶ 또는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❷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3)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법 §59의4⑧)

종전		개정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4)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2.12.31. 개정되어 '25.1.1.부터 시행되는 규정)

1)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법 §57의2, 소법 §129④~⑦)

종전	개정
〈신 설〉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p> <p>(1)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p> <p>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것</p> <p>②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납부하였을 것</p>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p> <p>(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text{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text{공제율}^*$ </div> <p>* 공제율</p> <p>①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p>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p>②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p> $1 - \text{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p>(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p> <p>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text{공제한도금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text{종합소득금액}}$ </div> <p>*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함.</p> <p>(4)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p> <p>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p>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129④~⑦)

종전	개정
〈신 설〉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p> <p>(1)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①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p> </div>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금액(세후 기준가격)</p> <p>(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차감율*</p> </div> <p>* 차감율</p> <p>①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p> <p>② 국내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1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p> <p>(3) 공제한도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소득에 국내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p> <p>(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p>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비교

구분		종전	개정
이중과세조정주체		집합투자기구(펀드)	투자자
이중과세조정방법		집합투자기구로 환급	투자자가 세액공제
펀드소득		집합투자기구가 환급받아 펀드소득은 세전소득으로 환원됨	외국납부세액 납부후 금액 (세후금액)
펀드소득 100만원(세전), 외국납부세액 10만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무시) (단위 :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세액 $100 \times 14\% = 14$ 실지금액 $100 - 14 =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세액 $90 \times 14\% - 8.6^* = 4$ * 외국납부세액공제 $10 \times (1 - 14\%) = 8.6$ 실지금액 $90 - 4 = 86$
	확정신고* (단위 :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소득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소득 90 외국납부세액공제 : $10 \times (1 - 35\%^*) = 6.5$ (한도 내에서 공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며 한계세율 35%로 가정함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소령 §117의2·§189의2)

종전	개정(안)
<p>□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및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계산시 차감율</p> <p>*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 공제율 **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 외국납부세액 × 차감율</p> <p>① 외국인원천징수세율이 확인되는 경우 : 실제 외국인원천징수세율(㉑)과 국내원천징수세율(㉒)간 차이 고려해 산출*</p> <p>* i) $\text{㉑} > \text{㉒} : (\text{㉒}/\text{㉑}) - \text{㉒}$ ii) $\text{㉑} \leq \text{㉒} : 1 - \text{국내세율}^{**}$ ** i) 공제율 산출시 :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ii) 차감율 산출시 : 국내원천징수세율</p> <p>② 외국인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 1 - 국내세율 * 신설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등</p>	<p>□ 외국인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개선</p> <p>○ (좌 동)</p> <p>○ 외국인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하여 ①에 따라 산출</p>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5)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소법 §61②)

종전	개정
<p>□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p> <p>○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p> <p>○ (좌 등)</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등)</p> </div> <p>-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p>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한도액 계산시 합산되는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2 개정, 농특령 §4⑦(1) 개정안)

종전	개정
〈신 설〉	<p>□ 혼인세액공제</p> <p>① (적용대상) 거주자가 20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경우</p> <p>②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③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에 한정하여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p> <p>③ (추정)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함.</p> <p>⑤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p> <p>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개정안)</p>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조특령 §94)

종전	개정(안)
〈신 설〉	<p>□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②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신 설〉	<p>□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10만원 초과분*×15%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 (좌 동) ○ 500만원 → 2,000만원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122의3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대상)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 (추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정	<input type="checkbox"/> 추정기준 합리화 ○ (좌 동) ○ 추정기준 변경 (수입·경비 → 소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td> <td>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td> </tr> <tr> <td></td> <td>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td> </tr> </table>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성실사업자</td> <td>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td> <td>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td> </tr> </table>	성실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성실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추정기준과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의 추정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간에 일관성 확보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29①)

종전	개정
<p>□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 (공제한도) 사업자별 연간 200만원 	<p>□ 세액공제 금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원 → 500원 ○ (좌 동)

〈개정이유〉 소득과약 제고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소령 §202의2·§203)

종전	개정(안)
<p>□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p> <p>○ 퇴직소득세액 = ① - ②</p> <p>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 승법 등 적용</p> <p>②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p>	<p>□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p> <p>○ (좌 등)</p> <p>① (좌 등)</p> <p>②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p> $= \frac{\text{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text{전체 퇴직소득}} \times \frac{\text{정산 전 이연퇴직소득 (정산 전 수령분 제외)}}{\text{전체 퇴직소득}}$ <p>※ 기납부세액 (= ① + ②)</p> <p>①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p> <p>②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전액 연금외수령을 가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의미함)</p> </div>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소령 §203)

종전	개정
<p>□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❷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❸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❹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적용시기〉 '25.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절차규정

(1)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령 §143③(1))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경정시 상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금액*의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부담 경감

(2)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법 §129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3%로 하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의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로 하였음. 그러나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예 : 3년 1개월)하여 3%의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은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거주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여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간 차이만큼 징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경우 계약 기간을 불문하고 원천징수세율을 20%를 적용하도록 한 것임.

(3) 납세조합

1)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법 §150③·§169)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으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2024년 12월 31일까지) ○ 공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소득세액의 5% 공제 - 사업자: 소득세액의 5% 공제 ○ 공제한도: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제16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근로자 납세조합, 사업자 납세조합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및 적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국외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자: 공제제도 폐지 ○ 공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소득세액의 3% 공제 - 사업자: 공제제도 폐지 ○ 공제한도: (좌 동) <p><input type="checkbox"/> 교부금 지급대상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근로자 납세조합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합리화(소령 §221)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범위에서 지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국세청 고시(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2%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 지급상한) 조합원 1인당 30만원 	<p><input type="checkbox"/> 교부금 지급 하한선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 → 1~10% <p>- (좌 동)</p>

<개정이유> 납세조합 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법 §119의3
⑥·⑦신설)

종전	개정
<p>□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 설></p> <p>※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p>	<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청구절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 세 및 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령 §157)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주주 1인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한 비율이 1% 이상인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주주 1인 및 그와의 특수관계자 **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에 있는 자 <신 설> ○ 그 외의 경우 : 소유주식 비율이 1% 이상인 주주 1인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범위 합리화 ○ (좌 등) - 법인은 주주 1인에서 제외 ○ (좌 등)

<개정이유>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시점 합리화(소득령 §154①·§159의4)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 ○ 주택 양도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예외규정 신설 ○ (좌 등)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제도(소득령 §155㉔)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input type="radio"/> 거주요건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input type="radio"/> 대상 :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input type="radio"/> 임대주택 범위 :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input type="radio"/>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㉕)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input type="radio"/>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 10년 <input type="radio"/>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 5년	<input type="checkbox"/>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input type="radio"/> ① (좌 동) <input type="radio"/> ② 5년 → 10년

〈개정이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종전	개정
<p>〈신 설〉</p>	<p>□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p> <p>○ 주택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① 소재지역 :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p> <p>㉠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p> <p>㉡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p> <p>㉢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p> <p>② 가액 상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날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p> <p>㉠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p> <p>㉡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p> <p>③ 취득기간 : 2024.1.4.*부터 2026.12.31.</p> <p>* 2024.1.4.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부발표일임</p> <p>○ 특례내용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p> <p>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p>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p>□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4.1.10.~20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양도자와 양수자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도자가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사업주체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에 해당할 것 ②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준공후미분양주택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즉 '준공후미분양주택')일 것 ②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 특례내용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024.12.31.까지 체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④ 2026.12.31.까지 체결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8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②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일 전 5년(2023.1.1. 이후 증여받은 경우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지분 (국내주식·국외주식)

<개정이유>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추가함(토지·건물과 비교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적용한다.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 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한시배제 1년 연장 ○ (좌 동) ○ 2025.5.9.까지 → 2026.5.9.까지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11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종전	개정																										
<p>□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장기민간임대주택(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중과제외 주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억원 → 9억원 이하 - (좌 동) ○ 단기민간임대주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적용 요건</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입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 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기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최소 6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시가격 상한</td> <td style="text-align: center;">6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지 : 298m² 이하 주택 연면적 149m²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 공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 증가율</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5%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대상지역 제외</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p>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 298m ² 이하 주택 연면적 149m ²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 298m ² 이하 주택 연면적 149m ²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한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한다.

12 소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확대(소득령 §167의3①)

종전	개정
<p>□ 소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p> <p>○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2024.1.10.부터 2025.12.31.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p>○ 2024.1.10.부터 2025.12.31.까지 취득</p>	<p>□ 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소형 신축주택에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12.31.까지 준공(2년 연장)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p>* 중과 적용 제외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p> <p>○ 2027.12.31.까지 취득(2년 연장)</p>

〈개정이유〉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9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4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p>□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적용 거주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기초연금법 3 ①). 2025년 선정기준액은 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호, 2025.1.13.) ②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특례대상 부동산 및 납입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연금부동산) ② 양도일부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액 = MIN(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제세액 = 연금계좌 납입액(1억원 한도) × 10% ② 한도 = 양도소득산출세액 ○ 사후관리 :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외수령* 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하는 경우 외의 인출 ○ 적용기한 : 2027.12.3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이연 특례 신설(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종전	개정
<p>〈신 설〉</p>	<p>□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p> <p>○ 적용요건 :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p> <p>* 요건 :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등기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p> <p>○ 과세이연 :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p> <p>-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납부*</p> <p>* ①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②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③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p> <p>○ 과세이연 신청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p>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5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종전	개정
<p>□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p> <p>*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p> <p>○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p> <p>②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p> <p>③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p> <p>○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p>	<p>□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p> <p>○ (좌 동)</p> <p>○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야 함'</p> <p>*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 :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비사업용 토지 : 10%) 적용 제외 ② 거주자 :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 적용기한 : 20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20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면적 : 85m² 이하 ② 임대기간 :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적용기한 : 20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20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부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예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정이유〉 든든전세주택* 사업 지원

*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2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의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개정이유〉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

3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혈액 	<input type="checkbox"/> 면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부가령 §40①)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제 범위 명확화 ○ (좌 동)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

<개정이유> 금융·보험 용역 면제범위 명확화

5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부가령 §69②)

종전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위탁·대리 판매 등)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 등 ○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기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 설>	<input type="checkbox"/> 특례 사유 추가 ○ (좌 동) ○ (분할·분할합병)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 §56의3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❶ 또는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❷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7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가액×가산세율 ○ 사업자 미등록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 0.5% ○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 0.5%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 3%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 1%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0.5% 	<input type="checkbox"/>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 0.5% → 1%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7의2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p>□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p> <p>○ (부과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❷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❸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b.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c.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d.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e.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p>○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p>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자산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등 <input type="checkbox"/>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input type="checkbox"/>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여금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 <input type="checkbox"/>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토지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기계장치 등	<input type="checkbox"/> 범위 조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비사업용 토지 제외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를 운영하는 사업 *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개정이유> 백년가게 지속 경영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령 §20의2①(8))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한도 : 6억원 - 요건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div>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 ○ (좌 동) -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

<개정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상증령 §29의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요건 :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고가로 소각 ○ 증여일 : 감자를 위한 주주 총회결의일 ○ 기준금액 : ①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와 ②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 (좌 동) ○ ① 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② 감자이익이 3억원 이상

〈개정이유〉 감자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상증령 §34의3)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법인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법인·외국법인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상증령 §49⑥)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감정가액 결정방법 ○ 원칙 :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 예외 :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 대상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토지·건물·주택·오피스텔 <추 가>	<input type="checkbox"/> 1개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

<개정이유> 감정평가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3①)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담보신탁 재산 평가 특례 ○ ①·② 중 큰 금액 ① 시가평가에 의한 시가 ② 신탁계약(수익증권)의 수익한도 금액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합리화 ○ (좌 동) ① (좌 동) ② 신탁계약(수익증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개정이유>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규정 보완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상증령 §43의2①)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p> <p>*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 감사인 자유선임 후 2년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감사인 선임</p> <p>○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p> <p>○ 공공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p> <p>○ (좌 동)</p> <p>○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p> <p>* 예 : 금융감독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p>

〈개정이유〉 공익법인 지정감사 면제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상증령 §43의5⑥)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p> <p>○ 제공대상 :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기부금통합관리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자료 제공대상 확대</p> <p>○ (좌 동)</p> <p>-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p>

〈개정이유〉 공익법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이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부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 2회 연속 → 3회 연속 ○ 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종전	개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

종전	개정
<p>□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수유자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u>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u> 	<p>□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u>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u>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ext{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times \frac{B}{C}$ <p>A :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C :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p> </div>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39)

종전	개정
<p>□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p> <p>①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p> <p>② 과점주주</p> <p>- (요건) 주주등(대상)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을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p> <p>-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대상자 범위 확대</p> <p>○ (좌 동)</p> <p>▪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p>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종전	개정
<p>□ 경정청구제도</p> <p>○ (의의)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p> <p>○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p> <p>○ (청구 대상)</p> <p>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p> <p>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좌 동)</p> <p>○ 청구 대상 확대</p> <p>- (좌 동)</p> <p>③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6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2)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간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 (좌 동) -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미수령 환급금 총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종전	개정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환급금의 총당 ○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총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총당 ○ (요건) 1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금액요건 상향 ○ (좌 동) ○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총당하는 분부터 적용

8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종전	개정
<p>□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사전통지 기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81의15)

종전	개정
<p>□ 과세예고통지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③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배제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종전	개정
<p>□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청구시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제출자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정상가격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 경정 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국조령 §54·§55)

종전	개정(안)
<p>□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불산입액) 조정소득금액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소득금액은 이전가격 규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 법인은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포함</p>	<p>□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이전가격 규정 등의 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조령」 제60조의2(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관련 규정) ○ (좌 동) - 금융 및 일반지주회사 모두 손금산입 → 일반 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손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국조법§26, 국조령 §60의2)

종전	개정(안)
<p>□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혼성금융상품 거래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경정 ④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p>□ 적용 순서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추 가〉</p> <p>(1 → 2 → 3·4 순으로 적용)</p>	<p>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p> <p>(1 → 2 → 3·4·5 순으로 적용)</p>
--	--

〈개정이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종전	개정
<p>□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택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세법 §58)

종전	개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출·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 가능 ○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p style="font-size: small;">*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자료의 제출·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요구기간 제한 삭제 ○ (좌 등)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6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국조령 §93)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해외 가상자산 잔액 산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매일 말일 최종가격 - (최종가격 적용방법) 매일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잔액 산출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가격 적용방법 보완 - (좌 등) - 매일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일 말일 최종가격 중 선택

〈개정이유〉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4)

종전	개정(안)													
<p>□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거짓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보고서별 3천만원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자료 제출·시정 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감경 가능 	<p>□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p> <p>○ (좌 등)</p> <p>○ 가중·감경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60%;">요건</th> <th style="width: 30%;">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중</td> <td>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경</td> <td>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요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	△50%
	요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	△50%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국조령 §146)

종전	개정(안)																									
<p>□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미제공·거짓제공 : 2천만원 ○ 일부 미제공 : 1천만원 ○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감경 가능 	<p>□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미제공·거짓제공(고의·중과실) : 2천만원 ○ 일부 미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요건</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오류 포함 (잔액 차이 1억원 이상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좌당 30만원 (한도 2천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 미제공 또는 제공 대상 아닌 정보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순 착오로 오류 포함 또는 일부 정보 누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감경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요건</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융정보 은닉 등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 3년간 성실 보고의무 노력 인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반 내용·정도 경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요건	과태료	중대한 오류 포함 (잔액 차이 1억원 이상 등)	계좌당 30만원 (한도 2천만원)	일부 미제공 또는 제공 대상 아닌 정보 제공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단순 착오로 오류 포함 또는 일부 정보 누락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요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금융정보 은닉 등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직전 3년간 성실 보고의무 노력 인정	△30%	위반 내용·정도 경미	△50%
요건	과태료																									
중대한 오류 포함 (잔액 차이 1억원 이상 등)	계좌당 30만원 (한도 2천만원)																									
일부 미제공 또는 제공 대상 아닌 정보 제공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단순 착오로 오류 포함 또는 일부 정보 누락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요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금융정보 은닉 등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직전 3년간 성실 보고의무 노력 인정	△30%																								
	위반 내용·정도 경미	△50%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국조령 §147)

종전	개정(안)																						
<p>□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과소신고 :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미신고·과소신고 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금액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td> </tr> </tbody> </table> <p>* 미신고·과소신고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명·거짓소명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감경 가능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p>□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율 및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율) 10~20%(누진율) → 10%(단일율) - (한도) 20억원 → 10억원* <p>* 미신고·과소신고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p> ○ 과태료율 인하 : 20% → 10% ○ 가중·감경 기준(국세청 훈령 → 국조법 시행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건</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2차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차 이상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재산 불법 반출·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5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 미신고인 경우</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인 신고·이전 연도 신고계좌 등으로 계좌정보 일부가 확인 확인되는 경우</td> </tr> </tbody> </table>		요건	비율	가중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해외재산 불법 반출·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	30%~50%	감경	다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 미신고인 경우	△50%	관련인 신고·이전 연도 신고계좌 등으로 계좌정보 일부가 확인 확인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요건	비율																					
가중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해외재산 불법 반출·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	30%~50%																					
감경	다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 미신고인 경우	△50%																					
	관련인 신고·이전 연도 신고계좌 등으로 계좌정보 일부가 확인 확인되는 경우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과태료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가중·감경 기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
(국조령 §148)

종전	개정(안)													
<p>□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제출·거짓제출 : 건별 500만원(법인은 1천만원) ○ 해외부동산취득명세서등 미제출·거짓제출 : 취득가액 등의 10%(1억원 한도) ○ 해외신탁명세 미제출·거짓제출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1억원 한도) ○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감경 가능 	<p>□ 가중·감경 기준 상향입법</p> <p>○ (좌 등)</p> <p>○ 가중·감경 기준(국세청 훈령 → 국조법 시행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70%;">요건</th> <th style="width: 20%;">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중</td> <td>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경</td> <td>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보완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보완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요건	비율	가중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0%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	감경	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보완하는 경우	30%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보완하는 경우	30%
	요건	비율												
가중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0%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												
감경	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보완하는 경우	30%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보완하는 경우	30%												

〈개정이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2)·(9))

종전	개정
<p>□ 그룹의 정의</p> <p>①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p> <p>②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p> <p>□ 구성기업의 정의</p> <p>①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p> <p>②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p>	<p>□ 정의 명확화</p> <p>①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매각예정기업 등) 포함</p> <p>② (좌 동)</p> <p>□ 정의 명확화</p> <p>①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매각예정기업 등) 포함</p> <p>② (좌 동)</p>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2)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8))

종전	개정
<p>□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p> <p>○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p>	<p>□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p> <p>○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p>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3)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74③)

종전	개정
<p>□ 최소적용제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매출액 평균 및 ②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① (매출액 평균) 1천만 유로 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 1백만 유로 ○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특례의 예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 → 미충족하게 되거나 ②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 → 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83①·④, §84①)

종전	개정
<p>□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신고기한 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77②)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매각 유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지원 대상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②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 사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의 상속인 포함

〈개정이유〉 재난지역 관련 세정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국징령 §19②)

종전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납세담보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 (공장재단·선박 등)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평가기준일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평가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일

〈개정이유〉 납세담보 평가 규정 명확화

3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국정령 §103)

종전	개정(안)
<p>□ 출국금지 요청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등 ②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 수 6개월 이상인 자 	<p>□ 기준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문구 삭제

〈개정이유〉 체납 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국금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025 개정세법

발행일	2025년 2월 14일 7판 1쇄
초판발행일	2019년 1월 25일
편저자	이철재,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박지섭
발행인	박정화
등록	제2015-000008호
발행처	웅빈출판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전화번호	02-736-7701
F A X	02-725-1907
I S B N	979-11-86964-68-2 (13320)
가격	5,000원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캔·복사·공유·매매 등의 일체 행위를 불허합니다.

*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 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 가능합니다.